

영등포구의회
제16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9. 19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4호로 2011년 9월 0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□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16조의2)

-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 : 고지서 1장당 150원
- 전자송달 +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 : 고지서 1장당 500원
-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

□ 부칙

- 기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봄.

4. 참고사항

□ 관계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2010. 12. 27일 개정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으로 “조례”는 앞말과 띄어 쓴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”로 띄어쓰기를 함.

- 안 제16조의2에 세액공제 금액을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에서 결정함.
-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납부안내문 발송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가 미비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1. 7.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와 같은 150원으로 정함.
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우편요금 절감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와 서울시와 형평을 고려하여 2011. 7.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와 같은 500원으로 정함.
-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함.
- 부칙에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 신청자는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봄.
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가 필요하고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·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,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납세 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92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 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[본조신설 2010.12.27]

2 지방세기본법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35조(납세의무의 확정)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.

1.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납부하는 지방세: 신고하는 때
2.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: 결정하는 때
3. 제1호 외의 지방세: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

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

제74조의2(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)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[본조신설 2010.12.27]

제19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.

1.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(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)에서 세액공제를 한다.
2.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.[본조신설 2011.7.28]